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1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수진 · 김문수 · 김준혁

허성무 · 송옥주 · 서미화

장종태 • 김종민 • 민병덕

임미애 • 추미애 • 전종덕

박지원 • 이기헌 • 박희승

이재관 • 박해철 • 정진욱

김 유·조계원·권향엽

박용갑 • 정일영 • 전진숙

송재봉 · 최민희 · 양부남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여성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여성전용 숙박업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여

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 는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여성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폭력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여성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3(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폭
	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
	<u>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u>
	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여성 관련
	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
	나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폭
	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
	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2호의2의 여성전용 숙

 박업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 호의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 4호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 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 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 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u>④</u>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여성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 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 하려는 자가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 으로 본다.

⑤ 여성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폭력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여성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경

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
 폭력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
 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폭력범
 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의 요 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